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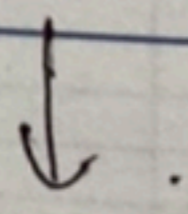
국일산업(코드번호:0161)의 당기(제20기) 회계기간은 2021. 1. 1. ~ 2021. 12. 31.이다.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61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올해 제2기 확정(10월 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명세 및 기타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올해 10월~12월에 과세로 공급한 세금계산서발급분은 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이다.</li><li>8월에 공급하고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담당자의 실수로 예정신고 시 누락하게 되었다. (부정행위가 아님, 미납일수는 92일이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다)</li><li>올해 10월~12월에 과세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22,000,000원이다.</li></ul>
매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올해 10월~12월에 과세로 매입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이다.</li><li>이 중 공장용 트럭(매입세액공제 대상)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과 토지와 관련된(자본적 지출)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li></ul>



100,000,000

2,000,000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10] : 80,000,000 / 8,000,000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고정자산매입[11] : 20,000,000 / 2,000,000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50] : 10,000,000<sup>1)</sup> / 1,000,000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19] : 22,000,000<sup>2)</sup> / -
- 가산세액계
  - 과소신고 가산세 =  $\{30,000,000\text{원} \times 10\% - (0\text{원} - 0\text{원}) \times 10\%\} \times 10\% \times (100\% - 75\%)^3$   
= 75,000원 ✓
  - 신고불성실 ▶ 과소·초과환급(일반)[71] : 3,000,000 / 75,000
  - 납부지연 가산세 =  $3,000,000\text{원} \times (25/100,000) \times 92\text{일} = 69,000\text{원}$  ✓
  - 납부지연 [73] : 3,000,000 / 69,000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없음<sup>4)</sup>

<sup>1)</sup>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참고** 고정자산매입란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이를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자본적지출 10,000,000은 고정자산매입이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기재한다.

- <sup>2)</sup>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시 '매출세액 ▶ 과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3]' 금액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19]' 금액란에 입력한다.
- <sup>3)</sup>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75% 감면된다.
- <sup>4)</su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구분	금액	세율	세액
	7.매출(예정신고누락분)	3,000,000	10/100	300,000
	예 과 세금계산서		10/100	

영수증 발행분[3] 금액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공제세액' ▶

-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수 있다.

조회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구분		정기신고금액				
		금액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	세금계산서발급분	1	250,000,000	10/100	25,000,000
	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3	9,000,000		900,0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1,000,000	10/100	100,000
		영	세금계산서발급분	5		0/100
	세	기타	6	52,500,000	0/100	
	예정신고누락분	7	3,000,000		300,000	
	대손세액가감	8				
	합계	9	315,500,000	㉔	26,300,000	
매입세액	과세표준	일반매입	10	145,000,000		14,500,000
		수출기업수입분납부유예	10			
		고정자산매입	11			
	세액	예정신고누락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3,500,000		350,000
		합계(10)-(10-1)+(11)+(12)+(13)+(14)	15	148,500,000		14,850,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6	30,000,000		3,000,000		
차감계(15-16)	17	118,500,000	㉕	11,85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㉔-매입세액㉕)				㉖	14,450,000	
경감공제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19	9,900,000			
합계	20			㉗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			㉘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1			㉙		
예정고지세액	22			㉚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㉛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㉜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㉝	13,800	
가산세액계	26				14,463,800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㉖-㉗-㉘-㉙-㉚-㉛-㉜-㉝+㉞				27		
총합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세액
25,000,000
900,000
100,000
300,000
26,300,000
14,500,000
350,000
14,850,000
3,000,000
11,850,000
14,450,000
13,800
14,463,800

구분				금액	세율	세액
7.매출(예정신고누락분)						
예 정 누 락 분	과 세	세금계산서	33	3,000,000	10/100	300,000
		기타	34		10/100	
	영 세	세금계산서	35		0/100	
		기타	36		0/100	
	합계			37	3,000,000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	일반매입	41				
수령금액합계표	고정매입	42	3,500,000		350,000	
의제매입세액		43		뒤쪽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44		뒤쪽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45				
재고매입세액		46				
변제대손세액		47				
외국인관광객에대한환급세액		48				
합계			49	3,500,000		350,000

구분				금액	세율	세액
16.공제받지못함매입세액						
공제받지못함 매입세액		50	30,000,000			3,000,000
공통매입세액연세동사업분		51				
대손처분받은세액		52				
합계			53	30,000,000		3,000,000

25.가산세영세					
사업자미등록등		61		1/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100	
	지연수취	63		5/1,000	
	미발급 등	64		뒤쪽참조	
전자세금 발급영세	지연전송	65		3/1,000	
	미전송	66		5/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67		5/1,000	
	지연제출	68		3/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9		뒤쪽	
	무신고(부당)	70		뒤쪽	
과소·초과환급(일반)		71	300,000	뒤쪽	7,500
	과소·초과환급(부당)	72		뒤쪽	
납부지연		73	300,000	뒤쪽	6,300
영세출과세표준신고불성실		74		5/1,000	
현금매출영세서불성실		75		1/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76		1/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	
합계			79		13,800